

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899호
- 나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3년 5월 30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2. 제안이유

-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함.
-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본 기금은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 수입으로 하며,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쓰여짐.

나. 시행 첫 해인 ' 23년 기부금*은 전액 정기·공금예금 예치 예정임.

* ' 23년도 예상 기부금액 : 약 1억 2천만원(일평균 모금액 토대로 산출함)

<연도별 예상 모금액 규모>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계
예상모금액	123,005	132,599	142,942	154,091	166,110	718,747
운용수익	1,632	2,678	2,887	3,112	3,355	13,664
계	124,637	135,277	145,829	157,203	169,465	732,411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계획안의 개요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해 설치되는 고향사랑기금의 운용을 위해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¹⁾에 따라 서울 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됨.

나. 고향사랑기금의 도입 배경

- 저출산·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의 가속화로 수도권과 지방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면서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.
- 이에 고향에 대한 자발적인 기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내 특산품·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고향기부법’)이 제정됨(2021.10.19, 시행 2023.1.1).
- ‘고향기부법’에 따르면, 개인은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고 반대급부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

1)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받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일부를 주민의 복리 증진사업에 활용하게 됨.

< 고향사랑기부제 세부내용 >

- ▶ 기부주체 : 개인(법인 불가)
- ▶ 기부대상 :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
(예시)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, 거주지 외 여러지역 선택 가능
- ▶ 기부 상한액 : 1인당 연간 500만원
- ▶ 세액공제 :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, 10만원 초과 시 16.5% 공제
예시)100만원 기부 시 24.8만원 공제-10만원 + 초과분 90만원의 16.5%인 14.8만원)
- ▶ 답례품 : 지자체는 기부금의 30%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
지역에서 생산·제조한 물품(농·수·축 임산물, 제조물품 등)
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(고향사랑 상품권 등)
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(숙박·관광 등 서비스 상품)
- ▶ 위반행위 처벌 : 기부강요·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

-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실시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선정과 ‘고향기부법’에서 위임한 고향사랑기금(이하 “기금”)의 관리·운용 등의 사항을 규정한 「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고향사랑조례”)를 제정함(제정 2022.12. 30, 시행 2023.1.1).
- 이후 분야별(고향사랑, 재정, 복지, 일반행정)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, 그간 모인 모금액을 기반으로 기금을 설치하기 위해 시의회에 기금 설치 및 운영계획안을 제출함.

다.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영계획안

- 서울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조례를 근거로 고향사랑기금을 본격적으로 설치·운영하기 위해 수입·지출 운용계획안을 제출함.
- 고향사랑기금은 서울시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의 기부금을 주 수입으로 하며,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쓰이도록 설계됨.

(1) 수입

- 기금의 조성은 ▶고향사랑 기부금, ▶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, ▶그 밖에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함.
- 2023년도 연간 기부금 수입 규모는 4월 중순까지 수령한 기부금(3천 8백만원)을 통해 산출한 1억 2천만원임.

(2) 지출

- 기금은 ▶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·보호, ▶지역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, ▶시민참여·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, ▶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지출함.

- 그 외 ‘고향기부법’에 따라 기부금액 중 15%의 범위²⁾에서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.
- ‘고향기부법 시행령’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30% 범위에서 기금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(제5조제1항).
- 서울시는 2023년 기부금 발생분을 별도의 기금 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채 전액 정기·공공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이나,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기금운용방향으로 볼 수 있음.
- 즉, 서울시에 애정을 갖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점을 고려해서, 비록 소액일지라도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·추진하고,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기부 참여로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함.
- 한편, 기금의 운용에는 홍보비, 운영경비, 위원회 수당 등의 기금 관리비용이 수반되므로, 지출항목에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해야 함.

2) 제7조(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.

1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5
2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3
3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: 100분의 12
4.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: 100분의 10

(3) 기부금 확충 필요

-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올해 이후 향후 4년간 기부금의 예상 누적 모금액은 7억 3천 2백만원에 불과함.

< 고향사랑기금 예상 운용 수익 >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계
예상 모금액	123,005	132,599	142,942	154,091	166,110	718,747
운용수익	1,632	2,678	2,887	3,112	3,355	13,664
계	124,637	135,277	145,829	157,203	169,465	732,411

주 : 일본의 고향납세제 사례(연 평균 7.8% 증가)를 참조해 산출

- 현 시점까지의 일일 기부금 수입 기준에서 보수적으로 산출되긴 했지만, 예상 운용수익이 기대 수준에 미흡한 소액이라 추계가 비현실적이거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.
-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성 있는 답례품과 홍보를 통해 기부금 규모를 확대하고 주민 복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됨.

담당자	연락처
김성만 전문위원	2180-8054